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3. 14. ~ 3. 18.(5일간) / 2019. 3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2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2건 (주의 7건, 시정 5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1건 / 60,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 수범사례 》

■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농업인 만족도 향상

-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온라인교육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먹거리 관광산업 발전 기대

■ 폐업 와이너리 운영실태 전수조사

-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고가의 장비 비치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와이너리와 직거래 주선

- 붙임 1. 주요 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20부. 끝.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2건	주의 7 시정 5		1건 60,000원
1	◦ 당직근무 규정 미준수	주의		
2	◦ 특별휴가 및 공가·병가사용 부적정	주의		
3	◦ 공용차량 점검 정비 등 관리 소홀	주의		
4	◦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5	◦ 농업기술센터 출납계좌(반환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6	◦ 업무추진비 집행 등 소홀	시정		
7	◦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8	◦ 농업법인 대상 보조사업 지원자격 검토 소홀	주의		
9	◦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소홀	주의		
10	◦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보조결정 등 소홀	주의		
11	◦ 시설공사 원가 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12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60,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규정 미준수

【현 황】

1.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1	2021.01.03.(일)	09:01:03	19:32:48	****	A	2021.01.02.당직
2	2021.10.23.(토)	09:09:42	20:55:30	****	A	2021.10.22.당직
3	2021.11.27.(토)	08:43:35	17:56:45	****	B	2021.11.26.당직

※ 농업기술센터 제출자료(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전산자료) 재구성

2.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근무일자	당직근무일지 작성 여부	당직자		비고
		직급	성명	
2021.03.20.	부	****	C	
2021.08.06.	부	****	A	
2021.09.08.	부	****	D	
2021.11.04.	부	****	E	
2021.12.21.	부	****	F	
2022.01.28.	부	****	B	

3. 당직명령 발령일 부적정 현황

근무일자	결재일	기안자		비고
		직급	성명	
2021.07월 당직명령부	2021.06.28.	****	C	4일 지연
2021.11월 당직명령부	2021.10.26.	****	C	1일 지연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에 의하면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함.
 - ※ 제19조에 따라 군의 직속기관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에 따르면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사항을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2021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1]과 같이 A 외 1명은 출근 시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거나, 퇴근 시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작동 하는 등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현황2]와 같이 C 외 5명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근무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현황3]과 같이 당직명령은 7일전까지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총 2건의 당직명령에 대해 지연 통보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휴가 사용 부적정

【현 황】

1. 특별휴가 사용현황(특가구분 오류 및 증빙 미첨부)

연번	사용일자	직급	성명	특가구분	특가사유	지적사항	비고
농업지원과							
1	2020.01.07.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졸업식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2	2020.01.07.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졸업식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3	2020.01.07.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졸업식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4	2020.01.21.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재롱잔치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5	2020.03.20.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육아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2시간
6	2020.04.10.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2시간
7	2020.05.06. ~ 05.12.	****	○○○	출산휴가	출산	특가구분 오류	경조사 휴가
8	2020.05.18.	****	○○○	출산휴가	자녀출산	특가구분 오류	경조사 휴가
9	2020.09.10.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10	2020.09.17. ~ 09.18.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11	2020.12.0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수능	증빙서류 미첨부	
12	2020.12.0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수능	증빙서류 미첨부	
13	2021.01.19.	****	○○○	육아시간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14	2021.04.15.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15	2021.05.26.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16	2021.10.07.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17	2021.12.07.	****	○○○	육아시간	육아돌봄	특가구분 오류	가족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유급)
시험연구과							
18	2019.01.30.	****	○○○	기타	자녀졸업식참석	특가구분 오류 증빙서류 미첨부	가족돌봄 (유급)
19	2019.02.1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학교행사 (졸업식)	증빙서류 미첨부	
20	2019.02.1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중학교 졸업식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주민등록 등본
21	2019.03.04.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입학식	증빙서류 미첨부	
22	2019.04.12.	****	○○○	육아시간	자녀병원	증빙서류 미첨부	
23	2019.07.0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5시간
24	2019.10.11.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25	2019.10.11.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증빙서류 미첨부	
26	2019.10.11.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27	2020.03.10.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예방접종	증빙서류 미첨부	
28	2020.05.01.	****	○○○	가족돌봄휴가 (유급)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원	증빙서류 미첨부	
29	2020.05.06.	****	○○○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 휴가	특가구분 오류	포상휴가
30	2020.07.06.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영유아 검진	증빙서류 미첨부	
31	2020.07.17.	****	○○○	육아시간	자녀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32	2020.08.05.	****	○○○	모성보호시간	임산부병원검진	증빙서류 미첨부	
33	2020.10.05. ~10.19.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34	2020.10.07.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영유아 자녀예방접종	증빙서류 미첨부	
35	2020.10.20.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행사	증빙서류 미첨부	
36	2020.11.26.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37	2020.12.14.	****	○○○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38	2021.01.1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졸업식	증빙서류 미첨부	
39	2021.02.25.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어린이집 입학	증빙서류 미첨부	
40	2021.04.08.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병원 내방	증빙서류 미첨부	
41	2021.07.26. ~07.30.	****	○○○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특가구분 오류	경조사 휴가
42	2021.07.28.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퇴원	증빙서류 미첨부	
43	2021.08.10. ~08.17.	****	○○○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특가구분 오류	경조사 휴가
44	2021.09.15.	****	○○○	육아시간	육아시간	증빙서류 미첨부	
45	2021.09.24.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예방접종	증빙서류 미첨부	
46	2021.10.18.	****	○○○	가족돌봄휴가	자녀 코로나19	증빙서류 미첨부	

				(유급)	검사		
47	2021.12.03.	****	○○○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2. 공가 사용현황 (휴가구분 오류)

연번	사용일자	직급	성명	공가사유	지적사항	비고
1	2019.10.04.	****	○○○	자녀결혼	휴가구분 오류	특별휴가(경조사)

3. 병가 사용현황 (휴가구분 오류)

연번	사용일자	직급	성명	공가사유	지적사항	비고
1	2020.06.26.	****	○○○	난임센터 시술	휴가구분 오류	특별휴가 (난임치료휴가)
2	2020.09.15.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3	2020.09.15.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4	2020.09.15.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5	2020.09.16.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6	2020.09.16.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7	2020.09.17.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8	2020.09.17.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9	2020.09.17.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10	2020.09.18.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11	2020.09.18.	****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급병가	휴가구분 오류	공가
12	2021.06.04. ~ 06.17.	****	○○○	코로나 양성자 접촉격리	휴가구분 오류	공가
13	2021.07.29.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4	2021.08.17.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5	2021.08.26.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6	2021.08.27.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7	2021.08.30.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8	2021.09.07.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19	2021.09.09.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0	2021.09.28.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1	2021.10.06.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2	2021.10.07.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3	2021.10.08.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4	2021.10.08.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5	2021.10.08.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6	2021.10.15.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7	2021.10.28.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8	2021.11.01.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29	2021.11.04.	****	○○○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30	2021.11.05.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31	2021.11.19.	****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휴가구분 오류	공가

【위법부당사항】

1.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특가구분 오류 및 증빙서류 미첨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고,
-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¹⁾는 같은 법 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라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인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부여받으며,
-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알림 공문 시행, 행정과-14424, 2019.06.28.)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는 학교 행사 동행 및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알림장, 행사안내문, 주민등록등본(매년 최초 신청 시 1회 첨부))를 첨부, 모성보호시간은 최초 이용 시 임신확인서, 수첩 등, 육아시간은 최초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휴가를 상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승인권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휴가사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하여야 함.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0.1.1.) : 자녀돌봄휴가 자녀2명 → 3일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0.10.20.) : 가족돌봄휴가 10일(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장애, 한부모 자녀인 경우 2일~3일 유급)

-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현황1]과 같이 22명, 47건에 대한 결재 상신 시 특가사유 부적정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휴가를 승인하는 등 특별휴가 사용절차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공가 및 병가사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 2022.3.22.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6판) II.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에 의하면 확진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021.03.31.)에 의하면 백신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황2, 3]과 같이 2020.09.15.~09.18.기간 중 와인산업팀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다른 직원들의 감염 위험으로 미출근 조치를 하면서 공가로 처리하였어야 했으나 병가로 처리하였으며 확진환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도 공가가 아닌 병가로 처리하였고 특별휴가(경조사 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에 해당하는 2건에 대해서도 공가로 처리하는 등 코로나 관련 복무관리지침 미이행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점검 정비 등 관리 소홀

【현 황】

차량등록번호	정비일자	차명	정비내역	운행거리 (km)	교환거리 (km)	비고
다**	2019.08.30.	스포티지	엔진오일교환 등	6,126	-	'20, '21년도 정비내역 없음
오**	2019.07.11.	쏘나타	엔진오일 교체	82,988	-	'20, '21년도 정비내역 없음
모**	2019.05.24.	그랜드스타렉스	бат데리 교체	109,928	-	'20, '21년도 정비내역 없음

※ 농업기술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차량 관리방법)제2항에 따르면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규칙 제2조(정의)에서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공용차량 점검 정비에 있어, 차량의 중요기관인 엔진 관련 정비내역 중 엔진오일 등의 통상적인 교체주기는 5천km ~ 1만km 또는 12개월 마다 교환하도록 차량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2019년 정비 이후 2020년, 2021년에는 엔진오일 교환 정비내역이 없는 등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발급대장 등재여부	비고
		직	성명			
18.09.11.	****-****-****-4187	****	G	유류카드	부	
18.09.11.	****-****-****-9765	****	G	유류카드	부	
18.09.11.	****-****-****-9757	****	G	유류카드	부	
19.02.21.	****-****-****-0669	****	H	연구비	부	
21.01.08.	****-****-****-1941	****	I	일반지출	부	
21.01.08.	****-****-****-1982	****	I	일반지출	부	

2. 카드 사용내역 보고 현황

연도	보고	미보고	비고
2019년	-	1월~12월	
2020년	-	1월~12월	
2021년	9월~11월	12월	1월~8월분 (‘21.9.7일에 일괄보고)
2022년	1월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다.
-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현황1]와 같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인사이동에 따른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현황2]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누락된 신용카드 발급대장 내역을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업기술센터 출납계좌(반환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1. 대상계좌

- 계좌번호: ***-**-*****
- 개설일자: 2004. 03. 16.
- 계좌명의: 영동군농업기술센터
- 사용용도: 반환금 등의 출납
- 계좌잔액: 10,017원 [2022.01.24.기준]

2. 연도별 (연말) 잔액 현황

일시	계좌 잔액(원)	비고
2019.12.31.	108,339	
2020.12.31.	130,645	
2021.12.31.	101,637	

3. 출납계좌 관리상의 문제점

계좌번호	용도	계좌 잔액(원) [2022.1.24.기준]	문제점	비고
-**-**	반환금 등의 출납	10,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과 지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결산 시 잔액이 '0'이 되어야 하나 감사대상기간 (2019.2.~2022.1.)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잔액 '0'원이 된 적이 한 차례도 없음○ 2020.06.28일 발생한 이자(45원) 세입조치 누락○ 예금이자 세입처리 시 원단위 단수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통장에 누적된 잔액이 계속 남아있음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6조(회계연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같은 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에 의하면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해야 하며,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모든 부서는 공금계좌의 투명한 관리 및 회계 관련 부조리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매 분기마다 자체 점검하고, 각 계좌별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입출금된 내역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관으로 점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이번 자체감사기간(2022. 3. 14. ~ 3. 18.)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2020.06.28일 발생한 이자(45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누락하였으며, 반기별 예금이자 세입처리 시 원단위 단수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수입과 세입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통장에 누적된 잔액이 계속 남아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처리된 잔액을 정리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등 소홀**

【현 황】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지급일자	적요	집행액(원)	수혜자	비고
2019.08.07.	송별선물 구입	40,000	J	
2020.05.15.	축하꽃다발 구입	50,000	K	
2021.05.10.	축하꽃다발 구입	50,000	L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2019년	-	1월~12월	
2020년	-	1월~12월	
2021년	1월~12월	-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나, '22.1.11일에 일괄등록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양양과 실·과·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는 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부서형태를 유지하는 기관의 보조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공통 경비에 한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부서장의 활동경비나 소수의 일부직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황1]과 같이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선물 또는 꽃다발을 구입하는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내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확대시행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2020.2.25.)호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3일 행정과에서 발송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요청」 공문에 따르면, “단체장, 과장급 이상, 부서별, 지방의원, 소속기관장 등은 ‘목적, 대상, 금액, 방법, 장소, 사용 일시, 대상 수(인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황2]와 같이 2020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내역이 없으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내역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공개하지 않고 2022년 1월에 일괄 등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건에 대해 즉시 공개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단위:천원)

건 명	지급일	지급액	인지세		채권		비고
			납부액	기준액	매입가	적정가	
2019년 여성친화형 농업 기계구입 대금 지급	19.05.17.	27,500			410	370	공채 과다매입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21.02.02.	3,272			70	40	공채 과다매입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사료작물수확기 수리	21.02.03.	7,425			160	100	공채 과다매입
꽃묘장시설공사 대금지급	21.07.09.	11,331	0	20			인지세 미납
코로나19대응 비대면 온라인교육 장비 구입	21.07.22.	9,546			210	130	공채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 아울러,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약식)계약서에 첨부 함.
- 또한,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구입 대금 지급’ 외 4건에 대해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역 개발채권 매입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누락된 인지세를 징구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업법인 대상 보조사업 지원자격 검토 소홀

【현 황】

1. 2019 ~ 2021년 농업법인 보조사업 지원요건 검토 현황

지원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명)	사업비(천원)			지원요건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출자금	자본금	운영 기간	생산사업 연계여부	사업부지 보유여부	
2020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 농업회사법인	709,000	496,000	<u>213,000</u>	100,000	<u>100,000</u>	4년	여	여	와인 산업팀
2021	체리안정생산 및 상품종묘목보급	농업회사법인 △△△△ △△△△	100,000	60,000	40,000	<u>10,000</u>	360,000	<u>5개월</u>	여	여	연구 개발팀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자부담 예치내역

보조사업자	자부담 입금일자	자부담 입금금액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지급금액	비고
계		213,030,940		496,000,000	
□□□ 농업회사법인	2020.09.10.	50,000,000	2021.03.26.	290,000,000	
	2020.12.14.	3,000,000	2021.06.03.	22,000,000	
	2020.12.23.	1,500,000	2021.07.09.	10,165,000	
	2021.02.09.	7,000,000	2021.07.30.	130,922,000	
	2021.04.16.	60,000,000	2021.08.10.	21,997,800	
	2021.08.09.	72,530,940	2021.08.20.	20,915,200	
	2021.10.07.	4,000,000			
	2021.10.13.	15,000,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 · 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원요건으로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있어야 하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다만, 개별사업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 여부,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황 1]

과 같이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적은 자본잠식의 경우로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자부담금 50% 이상 자기자본 확보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하나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 [현황 2]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2020.03.30.)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이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나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이 충분히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또한, 체리안정생산 및 신품종 묘목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심의를 추진하여 출자금 및 운영기간이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 △△△△ △△△△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과급효과 및 가점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타 사업 지원이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농가가 선정되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지원조건 확인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

연도	차량번호	부과기간	납부금액	납부일자	비고
2019	**수****	18.07.01.~18.12.31.	32,900	19.03.19.	
	우**	18.07.01.~18.12.31.	84,600	19.03.19.	
	수**	18.07.01.~18.12.31.	47,920	19.03.19.	
	모**	18.07.01.~18.12.31.	31,760	19.03.19.	
	모**	18.07.01.~18.12.31.	22,690	19.03.19.	
	수**	19.01.01.~19.06.30.	33,490	19.09.11.	
	우**	19.01.01.~19.06.30.	86,120	19.09.11.	
	수**	19.01.01.~19.06.30.	49,400	19.09.11.	
	모**	19.01.01.~19.06.30.	33,170	19.09.11.	
	모**	19.01.01.~19.06.30.	23,640	19.09.11.	
2020	**수****	19.07.01.~19.08.13.	8,000	20.03.19.	
	우**	19.07.01.~19.12.31.	86,120	20.03.19.	
	모**	19.07.01.~19.12.31.	23,920	20.03.19.	
	수**	19.07.01.~19.12.31.	50,520	20.03.19.	
	모**	19.07.01.~19.12.31.	4,360	20.03.19.	
	수**	20.01.01.~20.06.30.	50,720	20.11.17.	
	우**	20.01.01.~20.06.30.	86,460	20.11.17.	
2021	**모****	20.01.01.~20.06.30.	24,010	20.11.17.	
	모**	21.01.01.~21.06.30.	23,900	21.09.17.	
	수**	21.01.01.~21.06.30.	50,470	21.09.17.	
	모**	21.07.01.~21.12.31.	24,010	21.11.12.	
수**	21.07.01.~21.12.31.	50,720	21.11.12.		

【위법부당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용, 교육훈련용, 화물용 등의 용도로 12대의 관용 차량을 보유·사용·관리하고 있고, 이 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납부하고 있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2.일반운영비 - 2-2. 공공운영비(201-02) - 1.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연납을 통해 1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과 같이 관용차량 **수**** 외 4대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보조결정 등 소홀

【현 황】

○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내역

연도	보조결정내역			사업추진내역			비고
	일자	보조금액	사업내용	일자	집행금액	사업내용	
2020	03.12.	10,000천원	리더십 배양교육(1박 2일)	10.27.	3,760천원	힐링체험 및 역량교육(1일)	
2021	03.11.	10,000천원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특강, 6차 산업체험 등)	05.04.	2,960천원	특강, 힐링체험 등	

【위법부당사항】

-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의 잠재인적 역량개발을 통한 여성리더 육성 및 생활개선회 임원 역할 정립과 활동 강화로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조 100%(10,000천원)의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함.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황]과 같이 보조사업자인 ◇◇◇◇◇◇◇◇생활개선회에서 2021년에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없이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1회(차량임차, 강사료, 급식비 등 10,000천원)로 제출하여 사업 목적 및 금액산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음에도 보조결정 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예견되어 보조금변경신청을 통해 변경된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변경결정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했으나 보조금변경신청 및 변경결정 절차 없이 추진하는 등 보조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시보관소 보완공사(비가림 시설)	21,900	충충충충충	2021.06.22. (2021.06.23.) (2021.08.18.)	21,900	21,900	-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시보관소 보완공사(비가림시설)> 를 설계용역으로 추진하여 용역사로부터 원가계산서를 납품받았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계상된 간접공사비	회수금액	감액동의서 검토 및 정산 부적정	비고
꽃묘장 시설하우스 신축공사	계			60,000		제경비 포함
	19.05.24.~ 19.07.18.	○○○	48,757	48,757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미 감액	
				11,243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 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꽃묘장 시설 하우스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간접공사비(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설계내역서 및 착공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이 감액동의서 상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검토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하여, 상기 건에 대한 금액60,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60,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